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1
----------	-----

2019년 4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별표 3)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고)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¹⁾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라 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및 별표3)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p>	<p>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u></p>
<p>[별표 3]</p> <p>1. 체육시설</p> <p>가. (생 략)</p> <p>나. 기타</p>	<p>[별표 3]</p> <p>1. 체육시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기타</p>

1)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함.

현 행		개 정 안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신 설>	<신 설>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은행, 민간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하며,
-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수수료²⁾가 연매출액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0%이고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용카드 보다 낮아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이에 비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³⁾ 혜택을 받게 됨.
-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표 2) 참조)하여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감면 및 할인(법무담당관-1493, 2019.1.25.) 제도를 추진하고자 그 일환으로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도 감면대상에 포함코자 하는 것임.

[표 2]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현황

연도	공공시설	수수료 0% 대상 조례	감면대상 *	소관부서
19년	주요	소상공인 가맹점 연매출액 8억원 이하: 0%	일반 가맹점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대기업 계열사 가맹점 1.39%, 중소형 가맹점 최고 2.5%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8억 ~ 12억원 : 0.3% 12억원 초과 : 0.5%		

3) 공제금액 : (사용액-세전연봉의 25%)×공제율×과표소득 최종세율

연번	구분	개정대상 조례	감면대상 *	소관부서
2	조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외국어 등 강습료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4	조례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입장료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5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핑 및 서울영어마을 수유·관악캠핑 이용료(숙박, 비숙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6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당, 교실 등 사용료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7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보육실 등 이용료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8	조례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9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0	조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료	행정국 (인력개발과)
11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2	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설 등 이용료	한강사업본부
13	조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행정국 (자치행정과)
14	조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5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교양·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건강·생활편의 시설 이용료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16	조례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내 유료 전시·공연 이용료 등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7	조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형제작 비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 82만개 중 66만개(82%)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전체 508만명 중 128만명(25%)을

차지⁴⁾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구조가 열악⁵⁾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로페이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감면 혜택을 주려는 본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 한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유료 체육시설은 서남물재생센터의 테니스장·탁구장, 파크골프장이 유일하며 이들 체육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이용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음.

[표 3]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액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이용인원	징수금액	이용인원	징수금액	이용인원	징수금액
테니스장·탁구장	49,096	125,994	62,658	135,455	60,639	152,289
파크골프장	7,382	19,385	9,095	22,976	7,780	19,561
합계	56,478	145,379	71,753	158,431	68,419	171,850

<체육시설별 사용료>

1. 테니스장

- 개인사용료(1면 1시간 기준) : · 평일 5,000~7,500원, · 토, 공휴일 6,500~9,750원
- 전용사용료(1면 1일 8시간 기준) : · 평일 40,000~60,000원, · 토, 공휴일 52,000~78,000원
- 조명사용료(1시간 기준) 5,000~7,500원
- 사물함 임대료 4,000~6,000원/월

2. 탁구장

- 1일(1면 2시간 기준) 3,000~4,500원
- 1개월(1일 2시간 기준) 20,000~30,000원

3. 파크골프장

- 개인사용료 (9홀 기준) 3,000~4,500원
- 물품대여료 1,000~1,500원

4)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9~2022)

5) 영세사업장 영업이익률 지속하락 : '10년 17.7% → '15년 12.5%(5.2%p ↓)

- 여기서, 사용료 감면이 세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해보면 2018년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 약 1억 72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사용자가 제로페이로 모두 결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 감면에 따른 2018년 징수기준 감면금액은 약 1천 7백만원에 불과하고,
- 이를 현행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⁶⁾에 따른 2018년 총 감면액 330만원(13,272명)과 비교하여도 세수감소는 그리 크지 않음.

[표 4] 최근 3년간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현황

구분	이용객수(명)	정상가격(천원)	감면금액(천원)
2016	12,646	63,230	31,615
2017	16,672	83,360	41,680
2018	13,272	66,360	33,180

- 또한, 안 부칙에서 감면기간을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일몰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제로페이 감면금액 통계치는 미미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6)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주민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4.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설 이용자

④ - ⑥ 생략

- 한편,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것은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인만큼 핵심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서울시의 각종 유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관리운영 주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으로서의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감면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객의 제로페이 가입 및 보급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로페이 조기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충분히 시도해 볼직하고 감면대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만, 부칙에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10% 감면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약 6개월 정도의 시행기간만으로 충분한 제로페이 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 본 개정이 서울시가 서울시정 4개년 계획⁷⁾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9년 제로페이 이용액 목표치 8조 5,300억원 달성에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이용 저변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주안점을 두어 가입자 입장에서의 결제 편의성 개선, 자발적 가입 유도, 실질적 혜택 극대화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음.

7)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9~2022)

[표 5]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따른 제로페이 연차별 목표

(단위 : 억 원)

연도 항목	2019	2020	2021	2022
제로페이 이용금액	85,300	170,601	284,336	426,504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1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별표 3)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3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주관하는 행사	100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2. (생략)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p> <p>4. · 5. (생략)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 가. (생략) 나. 기타</p>	<p>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u></p> <p>4. · 5. (현행과 같음)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50%;">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u><신설></u>	<u><신설></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감면대상</th> <th style="width: 50%;">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u></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u>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u>	<u>10</u>
감면대상	감면율(%)								
<u><신설></u>	<u><신설></u>								
감면대상	감면율(%)								
<u>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u>	<u>10</u>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제할 경우 사용료 수익이 10%(감면율)감면 되므로 이에 따른 세입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며,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박 준 현 (02-2133-3832)